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통권 270호
2026. 11

[특집] 중대재해 진상규명의 의미와 과제

노래하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국적은 달라도 노동의 가치는 같습니다



특집 02

중대재해 진상규명의 의미와 과제

- 중대재해 재해조사 보고서가 나아갈 길
- 중대재해 이후, 남은 사람들의 애도와 기억을 위하여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진상규명을 향하여 걸어온 길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인터뷰

작은사업장 노동it수다 15

이주노동자 위험 높이는 작은 사업장의 작지 않은 문제들

풀어쓰는 노동시간 18

근로시간도 대기시간도 아닌,
다시 시동 걸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단상

알아보자, LAW동건강 21

산재 승인 후에 오는 어려운 일들

사람이 왔다 24

죽거나 다치거나 쫓겨나거나!

회원 이어말하기 26

서면 쓰지 않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서면을 씁니다
- 조애진 회원 인터뷰

현장의 목소리 30

"국적은 달라도 노동의 가치는 같습니다."
- 노조탄압과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에 맞서 싸우는 금속노조 일강지회 이야기

문화로 읽는 노동 34

"노래하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우리가 불이 되고 불이 우리가 될 때까지》 전시를 보고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37

의약품이 탄소배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일터 기후정의 공론장 (일기장) 40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기후정의를 말하다

젠더+노동+건강 ON 43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환대받고 안전한 하루가 되기를

노동자 정신건강 돋보기 46

심리부검으로 자살의 구조적 원인 찾아보기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2025)

한노보연 이모저모 48

이백일흔 번째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우리는 중대재해 이후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회원인 전주희는 『재난 이후, 사회』(2024, 나름북스)의 프롤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삶에서 죽음을 분리하려는 순간, 죽음은 온전히 애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 역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신자유주의는 삶을 비루하게 만드는 만큼, 죽음 역시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

이번 특집의 두 번째 글의 서두에서 이주연 회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대재해 경험은 노동자들에게 동료를 잃어버린 경험을 넘어, 안전한 자신, 안전한 타인, 안전한 세계를 잃어버린 경험이기도 하다. 잃어버린 세계를 애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대재해로 맞닥뜨린 죽음과 안전한 세계의 상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죽음을 온전히 애도하고, 삶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상실한 안전한 세계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복은 상실이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연한 사고로 치부하고 잊어버릴 게 아니라, 왜 그런 사고가 하필 거기서 그때 발생했는지를 설명 가능할 정도로 샅샅이 살펴야 합니다. 이른바 진실 찾기의 과정을 차근히 밟아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일상과 삶은 반복해서 죽음을 예고하는 구조가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중대재해를 경험한 이들은 이 공간에서 일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이 공간을 긍정하게 되면, 떠나간 이들의 삶과 죽음을 부정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공간의 정상성을 의문에 부치고, 사고와 위험 뒤에 도사린 구조적 문제를 밝혀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진실 찾기란 무엇일까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그를 위한 조사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떠나간 이들을 애도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2026년 11월호 특집은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재난 이후의 일터와 삶터를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함께 고민해봅시다.

– 선전위원장 일터

중대재해 재해조사 보고서가 나아갈 길

손진우 소장

연구소는 지난 몇 년간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이하 재해조사 보고서)'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재해조사 보고서는 중대재해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기록물로, 중대재해 조사를 실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인력이 작성한다. 그동안 '재해조사 의견서'라는 이름으로 내부에서만 다뤄지던 이 문서는,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재해조사 보고서'라는 법적 명칭을 얻었다.

일터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사업장 차원의 자체 조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중대재해는 다르다. 중대재해는 특정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다. 그래서 국가가 행정력과 전문인력을 투입해 직접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 전문인력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공공행정 기록물인 재해조사 보고서는 그동안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2026년 2월 공포, 6월 1일 시행) 공개 근거가 마련되었다. 노동부는 법 시행에 앞선 5월 27일, 2024년에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 51건의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이어 10월 7일에는 2023년 발생 사건을 중심으로 117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오랜 문제 제기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일단 환영,
그러나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그러나 현재의 재해조사 보고서는 제한적

인 수준에서만 공개되고 있다. 공개 대상과 시점, 범위 모두에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재해조사 보고서는 공소가 제기된 뒤에야 공개된다. 내사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끝난 경우에는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 사건의 공개 여부는 고용노동부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노동부는 그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만 골라 공개해 왔다. 지금까지 공개된 168건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국가안보 관련 사항은 보고서에서 가려진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첫째, 공개가 너무 늦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의 핵심 취지는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그런데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고조차 공소 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사고 발생부터 검찰 송치까지만 평균 8개월가량 걸리고, 검찰 처분까지 더하면 1년을 넘기기 일쑤다. '판결 확정' 기준은 더 심각하다. 1심 판결까지만 1년 8개월가량이 걸리고, 항소와 상고로 다투면 몇 년이 더 걸린다. 그사이 같은 공정, 같은 설비, 유사한 작업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고의 교훈을 알지 못한 채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

더 큰 문제는 '판결 확정' 기준이 공개 대상 자체를 왜곡한다는 점이다. 판결이 빨리 확정되는 사건은 대체로 사업주가 혐의를 인정했거나 쟁점이 단순한 경우다. 원·하청 책임 구조가 복잡하거나 경영책임자가 끝까지 다투는 사고, 즉 구조적 원인을 가장 깊이 들여다봐야 할 중대재해일수록 공개는 기약 없이 미뤄진다. 재발 방지에 가장 필요한 보고서가 가장 늦게 공개되는 것이다.

둘째, 피해자 유족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유족들은 가족이 일터에서 왜 목숨을 잃었는지 절박하게 알고 싶어 한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진상을 밝혀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함이다. 그러나 기소나 확정 판결 이후에나 보고서가 공개된다는 것은, 유족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유족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족들이 강하게 항의하지 않는 이상, 노동부가 먼저 조사 결과를 안내하거나 열람을 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열람이 법령상 절차가 아니라 담당 관서의 '배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하청 노동자 고(故) 김승모 님의 유족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항의 끝에야 보고서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상당 부분이 비어 있는 보고서를 단순 열람만 허락하면서 "그나마 우리니까 이 정도라도 열람하게 해드리는 것"이라며 생색을 냈다. 심지어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유족에게 공개될 경우 사측이 이를 방

어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도 내놓았다. 깊이 따져보면 두 가지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노동부 스스로 재해조사 보고서는 수사 결과와 무관한 문서라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내고 진술한 당사자가 바로 사측이고, 정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쪽은 오히려 유족이다. 유족을 거쳐 정보가 사측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말은 배려가 아니라 모욕에 가깝다.

셋째, 뒤늦은 공개는 사고 현장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효과성이 떨어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사업장은 서둘러 개선계획을 세워 작업 재개를 준비한다. 사업장에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강력한 현장의 힘이 있다면 이 과정에 개입해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보고서가 공개되기 한참 전에 작업은 재개되고, 재발 방지 대책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개선계획에 머문다. 현장 노동자가 보고서를 볼 수 없다면 그 대책이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짚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해당 사업장의 노사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부실했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짚어내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려면, 보고서가 바로 그 시점에 쓰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공개되더라도 핵심이 빠질 수 있다. 정보공개법상 '영업상 비밀'이 넓게 해석되면 사고 원인의 핵심인 설비 구조, 공정, 작업 방법 등이 가려질 수 있다. 김승모 님 유족이 열람한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비어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개 여부를 심의할 위원회도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그친다. 무엇을 영업비밀로 가릴지를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는지 심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공개'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재판 중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보고서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한국 사회는 이미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꾸려 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한 경험이 있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2018년 김용균 님 사망 사고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직접적·기술적 원인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담은 보고서를 만들고, 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했다.

그렇다면, 공개된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연구소 당장멈춰팀은 먼저 공개된 51건의 재해조사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슈페이퍼를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고조사의 질이 균일하지 않다. 어떤 사고에서는 재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재해의 원인으로 짚고, 재발 방지 대책도 '보호구 착용 철저'로 단순하게 결론지었다. 그러나 해당 사고는 사다리 상단에



▲ 중대재해 진상규명과 예방을 위해서 제대로 된 재해조사와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중요하다. 사진 : 한노보연

서 작업하던 중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사다리가 밀리며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다. 보고서는 사다리가 왜 고정되어 있지 않았는지, 안전모는 지급되었는지 묻지 않는다. 또 다른 사고에서도 목격자 진술과 사진을 통해 재해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뿐, 경사진 지붕 위에 자재를 올려놓고 뒤로 물러서며 작업하게 한 작업방식 자체의 위험은 진단하지 않는다. 개인 노동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뿐, 관리적·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없다.

이와 달리 사고의 원인을 관리적·구조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상세히 분석한 보고서도 있다. 그러나 애써 분석한 내용들은 '사고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항목에 이르면 단순해지고, 결국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가 중심이 되는 서술로 귀결된다. 작업방식의 문제나 관리적 대책의 부재보다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난간 미설치 같은 위반 사항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재해조사 보고서가 기소를 위한 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온 관행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해조사 보고서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애초의 취지대로 동종·유사 사고를 막는 재발 방지 자료로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늦지 않게 공개되어 유족과 현장 노동자가 볼 수 있어야 하고, 핵심 내용이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누가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고가 왜 일어났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로 서술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 막 공개의 문이 열렸다. 공개된 보고서가 다음 죽음을 막는 데 쓰일 때 그 공개는 비로소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일터

중대재해 이후, 남은 사람들의 애도와 기억을 위하여

이주연 회원, 상담심리사, 연구자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6조-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 죽음은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다. 남겨진 사람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관계 앞에 서게 된다. 애도는 그 단절 앞에서 일어나 삶을 다시 이어가는 과정이다. 슬픔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타인과 나누면서, 남겨진 사람은 끊어진 관계를 받아들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그러나 중대재해 경험은 노동자들에게 동료를 잃어버린 경험을 넘어, 안전한 자신, 안전한 타인, 안전한 세계를 잃어버리는 경험이기도 하다. 잃어버린 세계를 애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대재해로 인해 맞닥뜨린 죽음과 안전한 세계의 상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안전이 권리가 아니라 비용으로 계산되어 사람이 소모품으로 대우받고 부품처럼 교체되는 구조 속에서, 죽음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예고된 일터. 죽음은 이러한 현실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 현실은 중대재해를 경험한 노동자들에게 현재진행형으로 작동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동료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일이 되며, 동시에 자신을 다음 죽음에 내어주는 일이 된다. 수용은 윤리적으로도 실존적으로도 닿기 어려운 자리에 놓인다. 수용이 이처럼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면, 이 차단을 풀어내는 일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납득할 수 없는 경험은 계속되는 고통으로

"왜?"라는 질문은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

는 근본적인 방법이자,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그래서 남은 이들의 시간에서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된다. 비극에 함몰되지 않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책임을 져야 할 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대형 재난에서 유족들의 애도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요구라는 사회적 형태를 띠는 것은, 그저 분노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진상규명은 억울하게 떠난 이에 대한 애도의 시작점이면서, 나의 일과 일터에서 과거와 다른 현재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본에게 노동자의 죽음은 처리해야 하는 절차이고, 잘 넘겨야 하는 위기일 뿐이다. 그 절차는 효율성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집중될 뿐이다. 사람의 죽음은 자료로 다뤄지고, 남겨진 동료들은 사고 목격자 혹은 재발방지 교육의 대상 등으로 범주화된다. 이 과정에서 남겨진 동료들은 죽은 동료와 맺었던 인격적 관계를 박탈당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부품 역할을 강요받는다. 슬픔을 느끼는 애도자가 아니라, 절차를 완수해야 하는 도구가 된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활동과 기억이 쌓은 체험의 집합체이다. 그 공간을 심리적이건 물리적이건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과정은, 과거의 세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나의 세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 내가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진상조사의 주체가 될 때만, 생산의 효율에만 맞춰져 있던 시계가 비로소 작동을 멈춘다. 이제 인간의 시간을 돌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언제나 세계 속에 몸으로 존재한다

중대재해가 다른 재난과 다른 점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을 보내야만 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재난이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은 사고 이후에도 사고 발생 장소인 일터를 떠날 수가 없기에 사고 경험에 반복적으로 재노출되는 경험을 피할 수 없다. 우리의 뇌는 특정 경험에 대해 관련된 상황이나 장소에 신체적 감정의 꼬리표인 '신체 표지(somatic marker)'를 붙인다. 우리는 환경을 순수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표지를 통해 먼저 느끼고 그다음에 알게 된다.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왠지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몸이 그 공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신체 표지는 본래 위험을 피하도록 하는 적응적인 기능을 한다. 사람이 죽어간 일터에서, 그리고 그다음은 나 혹은 다른 동료들

이 될지도 모르는 일터에서 신체 표지는 본래의 적응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본래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몸의 반응에 따라 그 공간을 피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들에게 있어야만 한다.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작업중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을 피하라'는 언어는 공허할 뿐이다. 몸이 보내는 안전 신호를 억지로 눌러 참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개별 노동자들에게 있겠는가.

몸과 분리된 '의지'는 몸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몸을 잃는 것을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은 몸을 잃으면 '자기'를 잃는다. 생존을 위해서 나를 버려야 하는 모순에 갇힌 인간이 어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진상규명은 이제까지 일터에서 자신의 체험을 이해하고, 그 공간의 주인으로 서는 과정이다. 중대재해에서 경험한 충격을 '극복'하고 '적응'하면서 '위험에 사로잡힌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해체하고 안전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삶의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체험이 되어야 한다.

자본의 언어가 아닌 우리의 언어로 기억을 짓기

세상이 무엇을 인정하고 기억하는가는 그 자체가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다. 중대재해는 부주의한 노동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아 벌어진 사회적 참사이며, 남겨진 이들 또한 피해자이다.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자본은 죽음을 은폐, 축소, 왜곡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구조의 본질과 그 구조를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잊어버릴 것을 강요한다.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낸 것 때문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정적 결과(회사의 압박이든 동료들의 눈치든)를 걱정해 의도적으로 입을 닫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경험은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 그 속에서 침묵은 어쩌면 노동자들에게는 유일하게 가능한 서로에 대한 배려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진상규명은 이제까지 자본의 언어로 지어온 구조를 노동자들의 언어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자본의 언어는 현실을 은폐하는 수단이지만, 우리의 언어는 현실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진실이 없이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은 남은 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있었던 자리와 흔적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죽음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슬픔이 공유되고, 애도가 머물면서, 망자를 떠나보내고 남은 자들의 상실이 사회적으로 승인받는 시공간이다.

어쩌면 진상조사는 이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지 않을지 생각해 본다. 억울하게 죽은 이를 위로하고, 유족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 2020.8.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에서 진행한 산재사망.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 모습. 사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더 이상 불합리하고 부정한 현실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희생을 만들지 않겠다는,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남은 이들의 다짐과 애도와도 같은 것은 아닐까.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사람'이 있었던 흔적도 기억도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저 서둘러서 치워져야 한다면, 그것은 떠난 이와 남은 이들 모두에게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그 속에서 슬픔과 위로가 머물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진실 없는 위로는 허망할 뿐이며,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한때 삶을 공유했던 존재를 '위험'으로 기억하고 '교훈'으로 말해야 하는가. 애도도 권리이다.

함께 할수록 살아남는다

안전은 생존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내가 지금 안전한가?'를 24시간 확인하는 일종의 보안시스템 같은 것이다. 이 보안시스템은 생각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 보안시스템은 무엇을 '안전하다'라고 판단할까. 수많은 연구 결과는 문이 잠겨 있는지, 주변이 조용한지와 같은 물리적 신호보다 훨씬 강하게 반응하는 신호가 따로 있다고 말한다. 바로 사람이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위협의 부재'보다 '연결된 존재'로 안전을 감지한다. 우리 몸은 혼자 안전한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안전한 것을 진짜 안전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져 있다. 심리적 외상의 치유에 있어서 피해자를 지지하는 관계가 '치료 기법'이 아니라 치유 과정 그 자체이자 결과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노동자가 주체가 된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조직된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힘을 조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안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일터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진상규명을 향하여 걸어온 길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인터뷰

이숙견 상임활동가

2017년 3월 31일 낮 1시 30분(현지시각), 가로길이가 63빌딩보다 70미터 더 긴 선박이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순식간에 침몰했다. 스텔라데이지호에는 24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었고, 그중 2명의 선원(필리핀)만 구조된 채 나머지 선원들은 9년이 지난 지금도 미수습된 상태로 심해에 갇혀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이후 미수습자 선원들의 가족들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선사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드러내고, 찾고, 묻고 있다. 10월 17일, 허재용 1등 항해사의 가족이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장인 허영주 대표를 만났다.

'사건 종료'에 급급했던 선사와 정부

"선사가 4월 2일 오후 1시까지 부산지사로 오라고 했어요. 외교부와 해수부 공무원들은 아무도 없었고, 선사 직원들만 나와 상황 설명하는데 선원들 수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고 5일이 지나서는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면서 선원 직책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다며 위로금을 더 줄 테니깐 합의하자더군요. 가족들은 선원 구조가 더 급하다며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개별적으로 가족들과 접촉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언론마저도 차단하면서 사건을 빠르게 무마하려고만 했어요."

선원법상 실종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선사는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워 가족에게 최고장을 보내 개별적인 합의를 유도했고, 5월 5일 이르러서는 형식적으로 유지해 온 상황실마저 폐쇄한다. 심지어 가족들이 선사 앞에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선사 건물 앞 인도에 집회신고도 선점했다.

"2017년 4월 29일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 마지막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무작정 찾아갔어요. 저녁 6시부터 집회

가 있었는데 낮 1시부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오늘 무대에서 한마디만 할 수 있게,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바라며 종일 앉아서 기다렸어요. 발언은 못했지만, 다행히 세월호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어요."

'대통령 1호 민원'인데, 진상규명의 길은 아득하기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날 세월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한문을 전달하여,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 됐다. 이후 공식적으로 외교부 장관을 만났고 외교부는 주무부처임을 인정했다.

"예산 10억 원으로 실종자 수색을 진행했지만, 구명보트도 실종자들도 찾지 못했어요. 침몰된 선박과 함께 구명보트가 바닷속으로 말려 들어갔을 수 있다는 외교부의 설명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심해수색을 해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배 침몰 지점은 심해 4,000미터라 수압으로 모든 게 10원짜리 동전처럼 찌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은 거짓이었다. 가족들이 해외 사례를 검색한 결과 에어프랑스 447, 미국의 엘파로호 선박침몰사건 등에서 심해수색으로 블랙박스와 심지어 유해도 수습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1차 심해수색을 통해 선체와 유해를 확인하다

"2018년 3월 31일이 침몰참사 1년이 되는 날, 시민 문화제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회수하라'는 피켓을 들었죠."

대한민국 최초로 침몰 선박에 대한 심해수색을 시작하는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가족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국회의원과 언론을 찾아다니며 호소했다. 2019년 2월에야 진행한 1차 심해수색 결과 선박 잔해를 발견했고 VDR(블랙박스)도 회수했다. 사람의 뼈와 작업복도 발견했지만, 수색 과업지시서에 없다는 이유로 유해 수습은 중단되었다.

"블랙박스를 건져 올린 후 고압세척기로 세척하는 등 잘못된 처리로 메모리 칩이 훼손되어 침몰 당시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선원 유해를 발견하고도 수습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보공개거부' 처분했고요.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1심,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가족들은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이어 추가 심해수색을 하지 않아 가족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2021년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결정문을 보냈다.

침몰에 대한 선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으로 만들다

2019년 1차 심해수색 직전, 검찰은 선박의 결함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선사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기소한다. 가족들은 첫 재판 때부터 부산지방법원으로 찾아갔으나, 당시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족들을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 기일마다 법원 앞에서 선전전을 하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요구하였고, 결국 선박안전법 1심에서 선사대표(김완중)의 유죄가 인정됐다. 이어 2심 재판에서는 선사의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선박안전법 위반 1심 재판 때는 가족들만 선전전을 하다 보니 이동, 보관 때문에 우드락으로 만든 피켓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선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선전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죠. 그런데 2심 때부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이하 부산운동본부)에서 함께 하시며 연대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상규명을 향한 가족들의 분투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케 하였고, 부산운동본부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도 함께하게 된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부산해심원)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심판이 열린다는 것 또한 사회적참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가족들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직접 찾아서 보다가 '이해관계인'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산해심원에 제기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참석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판 변호인으로 등록했고, 심판에 참여하면서 침몰참사의 책임은 선사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선박안전법과 특히 형사재판에서 해양 심판의 결과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선박은 너무 특수한 분야라 검찰과 법원도 해심원의 심판 결과를 주시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 1심 판결도 부산해심원의 1심 재결이 나온 다음에야 나왔어요."

2023년 12월, 부산해심원은 허용되지 않는 격창적재·양하(여러 화물창의 화물을 고르게 내리지 않고 일부 화물창을 먼저 비우는 방식)가 침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2026년 3월 25일 중앙해심원 재결에서도 선박 개조 이후 선체의 취약과 장기간 피로손상 누적, 선사의 안전관리 소홀까지 중첩된 것으로 봤다. 이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선체 손상과 침수로 이어져 선박이 침몰했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해양안전심판에 가족들이 이해관계인으로 직접 참여해 선사의 책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9년 6개월 만에 격창적재·양화의 책임을 인정하다

2021년 말 민변 변호사들과의 회의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를 확인하면서 대책위는 긴급히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선사에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어야 한다고



▲ 2026.9.17.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형사재판 2심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 : 부산운동본부

검찰에 제기하기 위함이었다. 2022년 공소시효 소멸을 일주일 앞두고 검찰은 선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재판마다 대책위와 부산운동본부, 연대 시민들은 선전전, 탄원서, 서명운동을 통해 재판부가 선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2024년 2월 부산지방법원은 부산해심원의 재결을 일부 반영하여 불법 개조와 안전관리 부실로 침몰하게 되었다고 인정했다. 선사 대표에게는 금고 3년, 전 해사본부장과 공무감독에게 각각 금고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승인된 적재조건과는 다른 격창적재·양하 방식이 선체를 손상시켜 침몰로 이어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9월 17일, 부산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격창적재·양하와 침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9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대책위에서 확인하고 제기했던 선사의 책임, 검찰이 기소한 선사의 과실 모두를 인정했지만, 원심판결을 깨고 김완중 대표에게 금고 2년의 유죄를 선고하는 등 형량은 낮춰 판결하였다.

"정부, 법원, 검찰 모두 단 한 번도 가족들한테 참여할 수 있다고, 함께할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묻거나 말해 준 적이 없어요. 정부가 원하는 조기 수습을 하려면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9년에 헝가리에서 발생한 허블레아니호 침몰참사 때 외교부장관이 찾아가고 중대본도 구성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잖아요. 피해자가 많이 생겼지만, 허블레아니호 침몰참사 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도 애초에 중대본이 설치되었다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여전히 미완의 과제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침몰원인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해 수습이 이뤄져서 더 이상 미수습자 가족이 아닌 유가족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 모든 소망이 이뤄지려면 결국 2차 심해수색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일터



▲ "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지금 당장 철회하라!"
10월 27일 국회 앞에서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연구소도 함께하였습니다.
정말 폭넓은 분야에서, 그 동안 한국사회가 만들어 온 최저선들을 무너뜨리는 입법인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뜻을 모아주세요.

이주노동자 위험 높이는 작은 사업장의 작지 않은 문제들

임용현 상임활동가

용현: 단원FM 특집방송 “작은사업장 이주노동자에게도 안전할 권리를”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두 분은 지난 특집방송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미숙: 마문님이 “안전을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대목이 기억에 남았어요. 현장에 적응할 단계나 교육도 없이 바로 다음 날 기계 앞에 투입되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자의 시선과 압박감 때문에 다쳐도 말을 못 하고 간단한 약만 바르며 참아야 했던 경험담은,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일할 ‘사람’이 아닌 단순 ‘인력’으로만 취급해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안전을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절박한 외침을 가슴에 새기며, 위험할 때 거부하고 도망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깊이 느꼈습니다.

영신: 지난여름, 폭염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소식이 여러 차례 들려왔잖아요.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문제, 사람이 지낼 수 없는 기숙사를 배정해 놓고 비싼 기숙사비를 공제해 가는 문제,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문제 등 현재 한국의 잘못된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잘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교육도 보호구도 없는 작은사업장 이주노동자

용현: 사실, E-9 비자를 비롯해 한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젊고 건강한 상태로 입국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각종 직업병 등으로 건강이 훼손되는 비율이 정주노동자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결국 이주노동자의 건강 손상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일했던 작업장의 문제에서 나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영신: 네, 당연히 이주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일했던 일터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죠.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을 보면, 안전교육 및 안전설비 미제공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에서 왔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모국어가 아니니 당연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어요. 한국어로라도 안전교육을 하면 다행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인데도 한국인 반장이 한국말로 시연하며 "잘 봤지? 이렇게 하면 돼"라는 식으로 말하고 마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가 하면 안전 장비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얇은 가죽장갑을 제공해야 하는데 저렴한 반코팅 목장갑을 쓰라고 주는 경우, 기계에 장갑이 빨려 들어가며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요. 방진 마스크를 제공해야 함에도 저렴한 일회용 마스크만 제공했다가 호흡기질환에 걸리는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용현: 사실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일하는 분야는 정주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작은사업장일수록 저임금·장시간·고위험 노동의 문제가 중첩돼 나타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반월시화공단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미숙: 맞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정말 가슴이 턱 막힐 때가 많아요. 반월시화공단만 해도 도금이나 염색, 화학물질을 다루는 소규모 사업장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손가락이 잘리거나 추락하는 재래형 사고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하는 직업병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2005년에는 노말헥산 집단중독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정제로 쓰이는 유기용제에 안전 장비도 없이 노출되어 여러 이주노동자가 하반신이 마비됐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고는 눈에 보이니까 그나마 가시화라도 되지만, 유해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서서히 몸이 망가지는 직업병은 산재 신청조차 못 해보고 묻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도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봐야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업주는 "너 일 안 할 거냐, 본국으로 보내버리겠다"라며 재계약이나 체류 기간 연장을 빌미로 협박합니다. 산재 신청도 못 하고, 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받고 참다가 결국 병을 키워서 출국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아픈 몸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이익의 사유가 되는, 이 기괴한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위험의 이주화'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무료법률상담소, 반월시화공단에 문 열었다



▲ 안산공동체라디오 단원FM <월담의 노동it수다> 78회 방송 다시듣기.

용현: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월담노조가 올해 5월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소를 열고 상담 활동을 매주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미숙: 네, 월담노조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이주평등연대 등과 함께 지난 5월 17일에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를 열고, 안산 월담 사무실에서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은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산업단지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는 10시간, 12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법률적 도움이 필요해도 시간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한국어 서류나 법률 용어의 장벽 때문에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산재를 입어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찾아와서 자신의 노동권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이주노동자가 소규모 사업장에 갇혀 고립되지 않고,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영신: 몇 년 전부터인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면, 그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사용자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특히 미등록인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노동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월세, 관리비, 전기료 대신 납부해 주면, 퇴직금에서 정산해 주겠다고 해서 대신 납부해 줬다. 그런데 정산해 주지 않고 퇴직했다"라거나, "식비(쌀값)를 대줬다"면서 그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 불법이니까 퇴직금 못 줘"라는 식으로 말해서, 고용노동청에 문제제기해서 퇴직금을 받게 되니까, 원래는 자신들이 내주기로 했던 기숙사비 등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지 않아도 되었던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줘야 했던 퇴직금을 준 게 아까워서요. 상담소에서도 최근 이런 사례가 접수되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터

근로시간도 대기시간도 아닌, 다시 시동 걸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단상

권남표 노동시간센터 회원

한국의 수많은 휴게시간에 대한 의문이 생기던 차였다. 식당이 쉰다고 밖에 나갔다가 오라는 브레이크타임 3시간 휴게시간, 경비 및 관리를 하며 24시간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지만, 휴게시간이라며 쪼개져 있는 10시간, 아이들이 잠든 낮잠 시간은 행정 업무를 하든 말든 보육이 아니라는 어린이집의 1시간짜리 휴게시간, 6411번에 몸을 싣고 새벽부터 빌딩 청소를 하고 오후 청소를 위해 쉬라 했던 3시간의 휴게시간까지. 그 시간에 노동자들은 얼핏 자율성이 인정되는 듯 보였지만, 사업장을 떠날 수 없다.

노동시간도, 휴게시간도 배에 맞추는 항만

최근 한노보연과 노조가 함께하는 공공운수노조 노동시간 특례제 연구에서, 항만 노동자들을 만났다. 방문한 여러 항구에서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물량이 많을 때, 운송할 물량이 많다 보면 (퇴근) 시간이 늦어지죠”, “배가 없는 게 아니면 누군가는 계속 나와야 해요. 항만은 쉬는 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명절도 계속 돌아가.” 한국의 쉬는 날이 해외의 쉬는 날이 아니고, 오늘 날씨가 좋다고 해서 내일도 좋다는 보장이 없다. 항만은 배가 들어와 있는 동안 멈추지 않고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고, 부두에 쌓인 철제 상자를 야드로 이동시키고 정리한다. 입항해 있는 컨테이너선은 정박해 있는 시간이 돈이다. 한시바삐 물건을 빼고 실어야 한다고 재촉하니 노동자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나온다.

철제 컨테이너가 들고 나는 항만의 밤은 잠들지 않았다. 낮에도 화물은 멈추지 않았다. 내내 부두 작업은 계속되고, 엔진소리는 잦아들 새가 없었다. 컨테이너의 흐름은 24시간 멈추지 않지만, 사람은 24시간 일할 수가 없다. 헌법이 정한 노동법의 취지가 인간의 존

엄성을 보장받을 정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니, 근로기준법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만큼의 제약을 걸어뒀다. 기계도 무리해서 굴리면 퍼지는데,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면 쓰러지는 건 상식선이다.

현행법은 건강을 잃지 않고 생활에서의 자유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1주일에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또는 평균 52시간을 일하게 했다. 그러고서는 또 틈을 열어두었는데 그중 하나가 1주 52시간을 넘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근로기준법 제59조)제도다. 항공운송업, 수상운송업, 육상운송업 등은 실물 경제가 기반하는 물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법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정해두었다. 그러면서 다소의 염치는 있는지 노동자 건강권 보호 취지라며,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경우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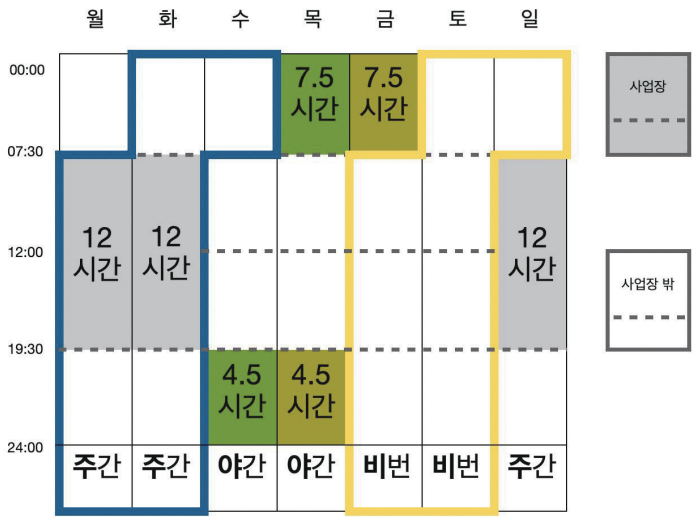
우리 연구는 그래서 항만 노동자가 얼마나 장시간 노동을 하는지, 그 장시간 노동이 항만 노동자에게 얼마나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되는지를 조사하려 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항만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의 사람들이 교대하고, 졸고, 휴식을 취하고, 호출을 기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만에서의 60시간이 40시간이 되는 비밀은 휴게시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은 스케줄표를 받아본 이후였다. 지원근무로 연속 근무하긴 했지만, 1주일에 52시간이 넘는 유급 노동시간은 쉽사리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1주일에 사업장에 머무는 전체 시간은 60시간이 넘는 아이러니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들이 받는 스케줄은 주주야야비비(주간 2일, 야간 2일, 비번 2일)의 3조 2교대 근무 패턴으로, 항구에 들어와 떠날 때까지 하루 12시간씩 항구에 머문다. 그런데 이 중 유급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주 60시간 동안 항구에 있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유급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만드는 비법은 하루 4시간의 휴게시간이었다. 2시간 일하고 1시간을 쉬고, 2시간 일하고 1시간을 쉬고, 이러한 패턴은 멈추지 않는 항구가 오차 없이 굴러가도록 하는 촘촘한 이빨을 가진 톱니바퀴 같았다.

스케줄 표 안에서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대형 장비에 탑승과 하차를 반복했다. 2시간을 일한 작업자는 대형 장비에서 하차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기 위해 셔틀로 작업 현장을 떠났다. 셔틀이 싣고 온 다음 작업자가 장비에 올라 2시간 동안의 컨테이너 운반 작업을 시작했다. 전 세계를 오가는 교역품들은 이들의 노고로 장비에 실려 멈추지 않고 이동했다.



▲ 부산항에서 항만 내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대형 지게차 운전 노동자의 일주일 스케줄표. 사진 : 권남표

현장 작업자는 "일단 12시간이지만 따지고 보면 일하는 시간은 8시간입니다. 나머지 4시간은 쉬는 시간인 거죠."라고 말했다. 항만의 일부로서 물품을 옮기고, 전체 작업을 관리하는 시간은 유급 노동시간이지만, 나의 자율성이 일부 보장되는 시간은 쉬는 시간, 즉 휴게시간이라고 불렸다. 그 시간 동안 작업을 중단하고, 휴게 공간에서, 눕거나 잠을 자고, 담배를 피우고, TV를 시청하고, 편의점을 이용하고,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2018년 버스 기사 5명이 제기한 소송, '다음 운행 시간까지 대기한 시간이 유급 노동시간이다'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대기시간을 전적으로 유급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나 다음 운행 버스의 출발시간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판결이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대법원 2018.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시동 걸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자율적으로 쉬었으니 쉬는 시간이라는 얼핏 듣기엔 맞는 말이다.

다시 돌아와 항만 노동자의 이 시간은 업무 지시가 이루어져 유급인 '근로시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2018년 판례에 따라 휴식에 큰 어려움이 없기에 유급인 '대기시간'이라 불리지도 못하지만, 사업장에 구속되어 떠날 수는 없는 그 어디쯤 무급인 흐릿한 시간으로 보였다. 항구를 떠나지 못하지만, 이들은 하루 4시간씩 무급으로 장비에 시동 걸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문득 현행 법리에서 무급인 휴게시간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사업장에 묶여서 집에도 못 가는 시간이 얼마나 온전한 자기 시간인지, 이런 사정이 시간 빈곤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쌀로 밥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휴게시간에 대한 단상이다. 일터

산재 승인 후에 오는 어려운 일들

김지나 회원, 노무사

#1. 산재 승인 후 전원과 요양 연기의 어려움

올해 2월, 철강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A 씨는 일을 하다가 롤러기에 손가락이 끼었다. 좌측 2, 3, 4 손가락 으깸 손상, 압착손상 및 펄프의 손상, 연부조직 절단, 개방성 골절 등을 진단받았고, 혈관 수술, 이식 수술 등 현재까지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이어오고 있다. 산재 승인은 받았지만, 사업장과 병원, 공단 사이에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한국어가 좀 더 원활한 재해자의 사촌 누나가 처리를 돕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대리인이 재해자가 처음 내원한 병원에 방문했을 때 회사 이사는 '회사가 알아서 다 해줄 텐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며 큰소리로 치료 중인 재해자를 다그치고 있었다. 대리인이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야 '소리 높인 건 미안하다'라며 돌아갔지만, 재해자도 사촌 누나도 회사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다. 사고가 난 직후 회사는 119를 부르지 않았고, 몇 시간이나 걸리는 작은 병원으로 재해자를 데리고 갔다가, 그 병원에서 치료 못 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옆 도시의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기 때문이다.

3월, 병원 간 전원(의료기관 변경) 처리 문제가 있었다.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입원 중 대학병원으로 하루 내원한 날을 병행 진료 넣었다가 취소하고 전원 신청을 하였는데, 대학병원에서 다시 그 병원으로 돌아갈 때 전원 신청서 접수가 되지 않았다. 전화로 확인한 후 5일이 지난 이후에야 접수됐다. 또 두 병원에서 요양 기간을 달리 기재한 진료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약 2주간 요양 기간 연장이 되지 않았고, 재해자는 그 동안 불안감을 안고 지내야 했다.

4월, 수술을 위해 대학병원으로 전원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전원 신청 결

정이 나지 않았다.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지 재해자는 불안했다. 대리인이 공단에 확인해 보니, 병원에서는 신청서를 보냈지만 공단에서 빠져 있었다. 다행히 그날 오후 처리되었다.

5월, 병원과 공단의 절차 처리 문제가 반복되자 사촌 누나는 재해자를 가까이에서 돌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재해자와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 산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돌아왔지만, 이번에도 제때 접수되지 않았다. 대학병원 담당자는 실수를 인정하였고, 거의 한 달 만에 전원을 확인하였다.

9월, 서울로 온 대학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진료 계획서를 낸다고 한다. 제출 전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 확인하니, 수술을 며칠 앞둔 시점의 진료 계획서에 '현 상태에서 원직복귀 가능', '취업 치료 가능'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지금 상태와 재해자의 원래 업무를 설명하고 다시 소견을 요청해 겨우 수정된 진료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재해자는 재해 이후 크고 작은 수술을 여러 번 거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위축돼 있었다. 그런데 치료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산재 절차를 걱정해야 했다.

#2.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지급처분의 어려움

3년 전, 뇌종양으로 산재를 인정받고 치료 중인 B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치료 중 재발하여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진료계획서상 그 시기가 '취업치료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 휴업급여를 부지급 처분받았다.

당시 재해자는 간단한 가위질이나 컴퓨터 키보드를 누르는 일도 어려웠고, 보행이 어려워 자주 넘어지며, 척수 전이 이후에는 앉아 있지 못할 만큼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두통 부작용으로 비마약성 진통제를 다량으로 먹고 있었다. 방사선 치료 25회 및 항암치료 3회(1회당 4회)를 병행하는 상태이기도 했다. 당시 재해자에게 가능한 취업은 무엇이었을까.

심사청구 끝에 부지급된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단은 또다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부지급 예정이니 또다시 심사청구를 통해서 받으라'라고 설명하였다. 취소된 처분 당시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또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대리인이 절차 규정 위반과 함께, 공단이 스스로 시정한 처분을 같은 근거로 반복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한 후에야 휴업급여를 제대로 받았다.

올해 5월, B 씨의 병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하반신 마비가 발생했다. 주 치료기관에서는 항암치료는 하지 못하고 있으나, 뇌압 상승 위험, 면역 및 감염 주의, 통증 관리



▲ 2024.6.25.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개혁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공공운수노조

등이 필요하고, 하반신 마비 재활치료도 필요해 입원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하지만 최근 전원한 병원 산재 담당자는 재해자에게 "'공단에서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지'에 관해서 물어왔고, 진료 계획을 올리더라도 공단에서 승인이 안 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입원 기간은 100% 자부담"이라고 설명하였다. 대리인이 산재 담당자를 찾아가 주 치료기관의 소견을 전달하였지만, 진료 계획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24시간 간병비 등 큰 비용이 지출되는 상태에서 재해자는 또다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받을까 봐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그리고 며칠 뒤 뇌압 상승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급하게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했다. 대리인은 당일 의무기록을 공단에 제출했다. B 씨의 입원 치료 진료 계획서는 승인되었을까.

산재보험제도가 가야 할 방향

A 씨가 3개 손가락 으깸 및 골절로 혈관을 살리고 이식하는 동안, B 씨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을 반복하는 동안 재해자는 자신이 치료받아야 할 상태임을 거듭 설명해야 했다.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요양 기간이 끝나지는 않았는지, 취업 치료에 관한 소견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도 재해자의 몫이었다. 산재를 인정받은 뒤에도 치료와 생계를 보장받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다.

의료기관과 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책임지고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는 없을까. 치료 종결을 하려면 치료 종결 이유와 예정일을 기재한 통지 절차가 있어야 한다. 진료계획과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치료 경과와 예정된 치료, 통증과 약물의 영향, 일상생활 수행 정도, 실제 담당 업무의 내용과 위험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산재보험의 역할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친 노동자가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고, 치료받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며, 회복 상태에 맞게 일상과 노동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일터

죽거나 다치거나 쫓겨나거나!

김현주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소장

10월 25일 대구의 성서공단에서 故 부뚜안님의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성서공단의 많은 노동자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 거제, 통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울산 HD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해 약 200명 정도가 모였다. 성서공단역에서 출발한 추모행렬은 뚜안 님이 살았던 와룡시장을 지나, 그가 공부했던 계명대학교를 거쳐, 그를 죽음으로 내몬 SJ오토텍 정문 앞으로 이어졌다. 1주기 추모제에 이어 10월 29일에는 대구경북지역 미등록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11월 4일 故 뚜안 대책위 진상조사단의 진상 보고회도 개최된다.

강제 단속으로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다

2025년 10월 28일 베트남 출신 청년 노동자 부뚜안은 공장으로 들이닥친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을 피해 창고 구석 실외기 뒤에 숨어 있다가 3층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윤석열 정권에서 수립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을 이어받아, 이재명 정권은 25년 4월 1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9월 30일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차 합동단속 계획[1]'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를 본 전국의 이주단체와 민주노총은 합동단속 철회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미등록노동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였다. 특히 '사람이 왔다-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네트워크'는 10월 28일 전국의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였다. 단속 추방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상 혹은 사망을 막아보겠다는 간절한 염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단속반에 의해 청년 노동자가 생을 마감했다.

1) 법무부, '25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10835

이후 약 두 달 넘게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지난한 투쟁이 이어졌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 앞 노숙 농성, 대통령실 이전 후 청와대 분수대 앞 릴레이 108배 등은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절규였다.

마침내 2025년 12월 31일 법무부 이민조사과장과 대구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소장이 뚜안의 유족 앞에 고개를 숙였다. 법무부의 공식적인 사과 방침을 전한 이들은 뚜안님 부모님들의 안정적 체류와 이후 대책 활동을 위한 체류 비자 발급을 약속했다.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을 우선시한 단속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미등록 노동자의 단속과 관련한 대화 테이블 구성 제안은 끝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마무리하였다.

부뚜안의 아버지 부반숭님은 당국의 사과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가족은 기관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과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65일 동안 뚜안과 우리 가족을 지켜보며 함께 아파하고 연대해 주신 모든 분께서도 이 사과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이를 통해 관계기관의 책임과 성찰 그리고 변화의 의지를 사회 전체가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주노동자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국에 왔으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는 역설적인 현실을 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노동으로 내모는 각종 제도와 법이 이들의 현실을 억누르고, 이러한 법과 제도로 많은 이주노동자가 한순간 미등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불법 사람은 없다. 제도가 불법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는 순간 '죽거나 다치거나 쫓겨나거나'라는 출구가 없는 선택지 앞에 공포의 외줄타기를 하게 된다. 이 외줄마저 끊어버리는 잔인한 폭력이 출입국 당국에 의한 단속 추방이다.

출입국 단속으로 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인정의 의미

그나마 다행은 근로복지공단이 뚜안님의 산재를 승인한 것이다. 그동안 많은 이주노동자단체가 출입국 단속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인정을 위해 투쟁해왔다. 뚜안님의 산재 인정이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노동자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조치다. 출입국의 단속 추방 제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폭력일 뿐이다. 정부는 폭력 단속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그리고 우리는 부반숭님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 일터

회원 이어말하기

서면 쓰지 않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서면을 씁니다

- 조애진 회원 인터뷰

정나위 회원

같은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더라도 누군가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누군가는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된다. 조애진 변호사는 부산 초읍의 한 카페에 놓인 3단 와인냉장고 앞에서 원·하청으로 나뉜 노동의 현실과 아래로 집중되는 위험을 이야기했다. 산재소송을 하며 법과 제도의 변화를 고민하고, 부산에서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연구소와 함께 해 온 그를 만났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간단하게 함께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조애진입니다. 부산참여연대 시민자치본부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회원,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조례안 검토에 법률적 의견을 보태고, 지방자치의 날 좋은 정책 선정 심사에도 참여합니다. 라이프는 부산에 기반을 둔 동물보호단체로, 학대·유기 동물을 구조해 치료하고 입양을 연결하는 한편 불법 번식장 대응과 동물보호법 개정 활동을 합니다. 저는 구조 동물의 소유권이나 번식장 고발 같은 법률문제를 자문하고 입법 활동에도 의견을 보탭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다 변호사가 되셨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입사 시험에서 법학을 선택해 자연스럽게 송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자신이 원고나 피고가 되는 소송을 직원이 소송수행자나 법률상 대리인이 되어 직접 수행하는데, 저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했고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집행 관련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다만 조직생활이 저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생활도, 잦은 인사 발령도 힘들었고, 경영평가 지표인 패소율 관리를 위해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까지 항소해야 하는 일도 제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휴직 기간 3년을 빼면 공단에서 11년을 일했고, 2016년부터 만 1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느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자처럼 일하는 시간의 정함이 없고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노보연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2016년에 부산지하철 기관사 한 분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건을 맡으면서였습니다. 부산에서 기관사의 자살을 산재로 제기한 첫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 이숙견 동지와 부산지하철노조 간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간·교대근무로 생긴 불면증이 우울증으로 깊어진 사례였는데, 면허에 문제가 생길까봐 정신과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분이라 입증이 쉽지 않았고 승소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소송에서는 우리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노동조합과 사건에 집중한 노조 간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그 뒤로도 노동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한노보연과 함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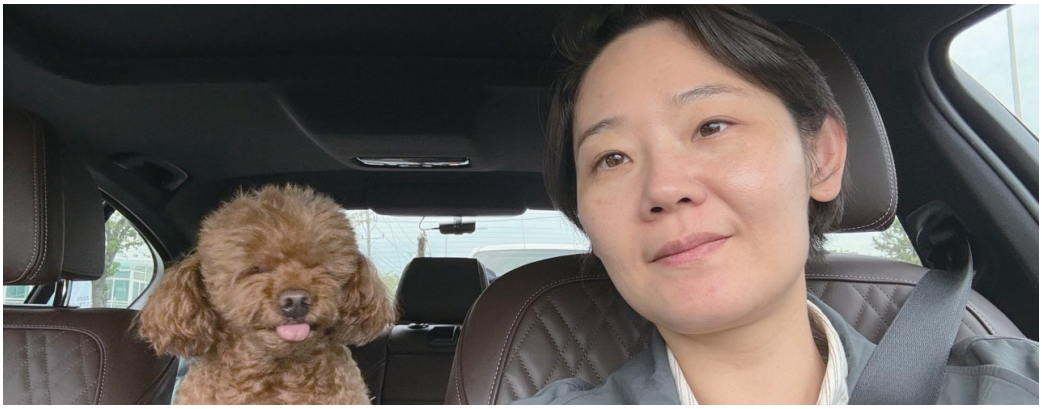
제가 맡는 사건의 절반 정도는 산재 사건입니다. 직력과 상병이 확실한 사건은 저에게까지 올 일이 없고, 공단 재심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거나 정황증거조차 없는 사건처럼 해도 해도 안 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1·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나 2심에서 뒤집은 사건들이 기억에 남고, 무엇보다도 기쁘다기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듭니다.

유족 사건 가운데서는 자살 사건이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프로젝트성 건설 현장에서 비정규직 현장소장으로 일하다 기숙사에서 사망한 분의 사건도 특별히 기억에 남아요. 행정심판까지 거친 유족이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였는데, 제가 선임비를 안 주셔도 되니 끝까지 가보자고 제안했고 근 3년 만에 소송으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산재급여가 나오면 유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분은 지금도 명절마다 제게 꼭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가장 절실하다고 느끼는 법제도 개선사항이 있을까요.

요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상당인과관계의 규범적 판단 기준을 산재보험법에 명문화하여, 공단의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단계부터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건설노동자의 직력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현장을 옮겨 다닌 노동자라도 고용보험 이력이나 근로 내역이 없는 기간이 있게 마련인데,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보호자 직업이 건설업으로 기재되어



▲ 조애진 회원과 어머님의 반려견.

있거나 배우자가 직업이 없었거나 거주지의 이동 경로가 현장과 겹치는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그 기간에도 건설 일을 계속했을 거로 추정하는 것이 규범적 판단입니다. 통상 형틀목공은 15년 이상의 직력이 확인되면 무릎 관절증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는데, 판정위원회는 명확한 증거로 확인되는 12년만 보고 불승인합니다. 법원에 가서야 규범적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해조사 단계부터 대법원이 일관되게 설명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달라진 점과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요.

위험성평가가 자리를 잡고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게 된 것은 법 제정 이전과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입된 사회적 비용이 정작 위험이 집중된 사업장의 산재 예방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안전 비용의 상당 부분을 법률비용으로 지출하고, 의무를 이행했다는 서류만 갖추면 사고가 나도 다투어 볼 수 있으니 예방보다 서류에 힘을 쏟게 됩니다. 결국 대형 로펌의 수익만 늘었을 뿐, 정작 돈이 쓰여야 할 곳에는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양형기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실형 선고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3월에는 부산지법의 항소심 재판부가 하청 노동자가 숨진 부산 1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원청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첫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한노보연에 아쉬운 점과 든든한 점을 듣고 싶어요.

지역에서 새로운 노동안전 활동가가 충원되지 않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 바탕에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부산·울산·경남을 떠나는 현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지역의 일자리 정책, 수도권 일극 체제 문제에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든든한 점이 더 많습니다. 한노보연 모임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오랜 고민을 안고 활동하는 젊은 여성 동지들을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힘이 됩니다. 한노보연이 부산에서 계속 의지할



▲ 사진 : 조애진

곳으로 남아, 젊은 동지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노보연이나 노동안전보건운동에 제안해 보고 싶은 사업이나 방향이 있을까요.

최근 민주노총이 원청교섭 돌파를 내걸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청 구조는 노동안전보건운동 안에서의 연대마저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구조의 해소가 운동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부산 초읍의 한 카페 한쪽에 3단 와인냉장고가 있었다. 조애진 회원이 이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3층 와인은 허리 한 번 굽히지 않고 꺼낼 수 있지만, 2층 와인은 허리를 숙여야 하고 1층 와인은 무릎을 꿇어야 꺼낼 수 있습니다. 판정위원회에서 작업 영상을 보다 보면 같은 현장에서도 이 냉장고처럼 1층, 2층, 3층으로 나뉘어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게 되고,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가 위험이 뻔히 보이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파견이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더 힘든 일을 하는데도 산재 승인 사건들을 보면 원청 소속 노동자들의 입증이 월등히 쉽고 인정 비율도 높다는 역설입니다.

사람은 어느 일자리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데, 원청과 하청 사이의 임금 격차가 주거와 소비의 격차로 이어지고, 준거집단도,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연대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회원 동지들께서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 망막에 구멍이 나는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활자를 보고, 서면을 작성하는 일이 많이 힘듭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송무나 자문처럼 글자를 봐야 하는 일에서 잠시 떠나, 유기된 동물들이 반려가족을 찾거나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돌보는 일에 종사하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일터

현장의 목소리

“국적은 달라도 노동의 가치는 같습니다.”

- 노조탄압과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에 맞서 싸우는 금속노조 일강지회 이야기

임용현 상임활동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서공단지역지회 등지에서 울려 퍼진 이주노동자 단결의 함성이 올해 들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정주노동자와 함께 노조로 뭉쳤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온다. ‘국경과 인종, 피부색을 넘어 모든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치를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부대낌이 뒤따른다는 걸 알기에 현장의 이야기가 몹시 궁금했다. 전북 김제에 있는 ㈜일강의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만들고 겪은 파란만장한 일들을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심승보 지회장에게서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10월 21일 지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인터뷰에 배석해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금속노조 전북지부 이장원 조직국장께도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뼈 빠지게 일 시켜도 군말 없이 해내던 시절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일강은 엔진 및 변속기 부품을 주력 생산하는 회사다. 국내에는 평택과 김제에 공장이 있고, 두 공장 합쳐 노동자는 400여 명이다. 심 지회장은 지평선산단에 있는 ㈜대승 김제2공장에 2009년 입사했다가 같은 계열사인 ㈜일강으로 2012년 자리를 옮겼다. 두 회사 모두 자동차부품 전문 제조사인 대승그룹 소속이다. ㈜일강에서 제조한 부품은 주로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등에 납품된다. 완성차 대기업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되어, 김제 지역에서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입소문을 탔다. 가공생산부에서 반장으로 줄곧 일해온 심 지회장이 노조 설립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일까.

“전에는 주 70시간 넘게 일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했습니다. 잔

업·특근 한 번 빼기도, 휴가 쓰기도 힘들었죠. 산재사고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회사는 산재 신청을 가로막고 공상 처리하거나 '부서화합비'라고 모아둔 돈으로 치료비를 대주곤 했습니다. 임금은 늘 최저시급이었고요. 부당한 일을 겪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노조가 필요하단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쳐 노동조건을 바꿔보기로 했고, 2025년 2월 금속노조 가입총회를 열었습니다."

사측은 일찌감치 유령노조를 만들어뒀다. 하지만 말 그대로 유령노조. 이렇다 할 노조 활동은 전혀 없었고, 본인이 유령노조 임원인 줄도 모르는 관리자가 있을 정도였다. 어용노조밖에 없던 시절, 일강 노동자들은 극심한 현장 통제에 시달리며 일해야 했다. 시업 5분 전 조회는 물론이고, 점심시간 이후에도 5분 일찍 라인에 투입되기 일쑤였다. 정주노동자들도 그럴진대, 하물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들 상황은 어땠을까.

"지금은 이주노동자들에게 한 달간 휴가를 보장하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회사가 이주노동자들 휴가를 2주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국으로 휴가를 가려면 비행기표 예매부터 각종 서류 준비하느라 2~3일은 족히 시간을 써야 하거든요. 심지어 한 이주노동자가 비행기표를 예매해놓았는데, 회사가 물량이 많다며 갑자기 취소하라고 해서 결국 푯값도 환불받지 못한 적도 있어요."

민주노조 만들고 현장도 안전해졌다

무권리의 현장에 민주노조가 들어서자 많은 게 달라졌다. 회사가 걸핏하면 어겼던 주52시간 노동이 드디어 지켜졌고, 연차 사용도 자유로워졌다. 조기 현장 투입, 무급 조회 같은 공짜 노동도 사라졌다. 그동안 회사 마음대로였던 노동시간 길이와 휴식일 배치에 대해 이제는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여지가 넓어졌다고 심 지회장은 말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강요당했던 잔업이나 특근을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조합 있기 전에는 주말 특근 계획을 그 주 목요일 돼서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거든요. 지금은 특근 일정이 잡히기 1~2주 전에 현장 노동자들에게 미리 특근 여부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시하는 현장에서 위험은 시시각각 닥쳐온다. 위험 요인이 즐비했던 현장을 탈바꿈한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기존에도 이런저런 안전 설비는 있었는데,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느냐가 중요하단 걸 노조하고 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에는 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든지, 계단 폭과 너비는 어때야 하는지 법에서 세부 기준을 다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저희가 노조 만들고 나서 회사도 서둘러 재정비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손을 보면서 비용도 꽤 들였다고 하더군요."

회사가 당연히 준수해야 했을 각종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마저, 지회 설립을 계기로 순탄하게 확립된 것은 아니다. 지회에서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도 구멍 뚫린 현장의 안전 문제를 뒤늦게 메꿔 나갔다. 때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고,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 왔고, 고용노동부에도 관련 내용을 진정하면서 바꿔낸 거죠. 일례로, 예전엔 현장 바닥에 절삭유가 흥건했어요. 절삭유가 사방으로 튀는 걸 방지하려고 가공 설비 앞쪽에 가림판을 설치했고, 그 뒤로 화재위험이나 낙상사고 같은 위험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측이 이주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리는 이유

생산 관리에만 치우쳐 있던 회사를 바로 세운 민주노조는 저들에게 눈엣가시나 다름없었다. 심 지회장은 회사가 김제 공장에 있는 8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약한 고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주노동자 가입으로 민주노조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2025년 단체협약에서 이주노동자의 비자 변경이나 재계약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기로 노사 합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지회 설립 이후 사실상 휴면 상태였던 유령노조에 직원들을 무더기로 가입시켜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가로채더니, 이주노동자 평가 기준도 일방적으로 개편한 겁니다."

일강 사측은 어용노조 몸집 불리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어용노조가 다수노조로 올라선 순간 탄압의 칼을 본격적으로 빼들었다. 2026년 4월, 사측은 어용노조 간부를 이주노동자 인사 평가자로 전격 선임했다. 민주노조 설립 직후였던 2025년 2월, 다른 관리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기숙사로 달려가 "금속노조 계속하겠다는 사람은 내가 비자 연장 안 시켜줄 것"이라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던 장본인이었다. 그 뒤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졌다.

"제가 3년 전 반장으로 있을 때 현장 노동자 한 분이 끼임 재해로 부상을 입었어요. 당시 회사가 재해자에게 치료비 4천3백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사건을 다시 꺼내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회장 개인을 표적 삼은 탄압은 현장 투쟁으로 막아냈지만,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용노조 간부가 인사 평가자로 변경된 이후, 모두 13명의 이주노동자가 회사를 떠나야 했다. 이주노동자에게 비자 연장과 재계약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비자 변경 및 연장에는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사 평가 시기도 원래는 비자 만료 2개월 전에 잡혔다. 게다가 지회 설립 전까지만 해도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이주노동자들이 비자



▲ 2026.10.21. 현장 투쟁 상황에 대해 이야기 중인 심승보 금속노조전북지부 일강지회장. 사진 : 한노보연

변경·연장이 거부되거나 재계약에서 탈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니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조작할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평가 기준 미달로 체류 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한 이주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 동지 부당해고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인사 평가 자료를 보면 '금속노조 조합원 축출'이라는 목적하에 평가 점수를 날조했다는 정황이 뚜렷합니다. 성과 평가 항목에는 근태나 다기능화 같은 정량적인 평가 지표가 있어요.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보니 1차 평가를 한 조장은 80점을 매겼더라고요. 재계약 기준이 70점이거든요. 이주노동자들이랑 같이 일하는 현장 관리자는 높게 평가했는데, 정작 이 노동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부서장, 기장 같은 인사들이 고의로 낙제점을 매긴 겁니다."

체류 자격과 취업비자를 볼모 삼아 이주노동자를 길들이려는 사측에 맞서 일강지회는 8월 11일부터 사무동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중단과 인사 평가 기준 투명한 공개, 계속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73일째(10월 21일 기준) 무기한 로비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HD 현대중공업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노조로 뭉쳐서 지독한 차별을 끝장내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이 동지들의 투쟁에 저희도 용기를 얻어서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희 간부 동지들도 매일 회사의 출입 방해로 로비 농성 들어갔다가 출구가 막혀서 애를 먹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고생한 만큼 다가올 승리의 기쁨도 곱절로 커지리라 믿습니다. 일강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지키고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한 현장을 만들 때까지 동지 여러분의 응원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일터

“노래하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우리가 불이 되고 불이 우리가 될 때까지》 전시를 보고

박기형 선전위원장

시각예술에서 푸티지(Footage)는 보정·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가리킨다. 이 푸티지들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하나의 거대한 아카이브를 이루고 있다. 푸티지에는 휙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져 종종 놓치고 마는 이야기들, 중심 구도에서 비켜나 있는 주변의 존재들이 담겨 있다. 이 푸티지들이 누군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하나의 영상으로 배열되고 구축된 것, 곧 파운드 푸티지(Found Footage)가 되는 순간이 있다. 그를 통해 푸티지들은 분명히 멈춰선 이미지, 강렬한 이야기, 중심을 뒤흔드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범람하는 푸티지들로 이뤄진, 형체 없이 유동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규제받고 억압되어야 할 대상이면서, 저항의 무기이자 해방의 창구다.

압바스와 아부-라흐메의 예술 실천

올해 팔레스타인 작가 듀오 바셀 압바스(Basel Abbas)와 루안 아부-라흐메(Ruanne Abou-Rahme)의 첫 개인전이 누화컨템포러리에서 열렸다. 그들은 20여 년간 식민주의에 맞서왔다. 어떻게 삭제와 부정에 저항할 것인가? 그들은 한편으로는 푸티지들의 아카이브, 즉 기존 아카이브를 발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제작한 사운드, 이미지, 텍스트를 샘플링하고 재구성한다. 그럼으로써 즉흥적으로 구성된 아카이브(an improvised archive)를 형성한다. 이들의 파운드 푸티지는 일상에서 이뤄지는 반식민적 저항의 실천들이 절대로 미미하지 않고, 해방을 향한 집단적 상상력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시 소개에 따르면, “작가들은 실시간으로 화면 위에 수많은 영상과 이미지를 병치하며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고, 이러한 이미지 구성 위에 즉흥적인 사운드를 중첩해 작업의 리듬을 형성한다.”

압바스와 아부-라흐메는 톰 홀러트(Tom Holert)와 나눈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미디어와 팔레스타인 산업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이 내놓는 그토록 많은 팔레스타인

재현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활성화하기보다는 비활성화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이 아카이브로부터 우리는 정말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발굴하고 있는가?[1] 길 Z. 호흐베르크(Gil Z. Hochberg)는 그게 진정한 돌파구였던 적이 있는가를 되묻는다. 그에 따르면, 아카이브에서 발견하는 행위는 이미 알려진 역사적 정보를 거듭해서 확증하는 작업에 더 가깝다. 같은 정보와 같은 사실을 거듭 발견하고, 폭로하고, 공유하는 일은 사람을 무감각하게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호흐베르크가 말한 '아카이브 피로(archive fatigue)'에 빠질 수 있다.[2] 그러다 팔레스타인을 고정된 틀에, 그것도 외부자나 지배자의 시선에서, 피해 서사나 오직 피해자로만 정체화한 이미지에 가둬버리기도 한다. 이 위험에 맞서, 팔레스타인을 살아있는 것으로 재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피로와 대상화의 문제는 노동안전보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매일 일터에서는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있다. 한 명, 한 명의 죽음을 드러내고 알리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누군가의 죽음이 오직 비참한 이미지만으로 소비될 경우, 반복되는 부고들에 무감각해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같이 반복되는 죽음에 지쳐 피로해질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노동자들을 오직 위험천만한 일터에서 죽고 다치는 피해자로만 정체화하는 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카이브 피로와 대상화에 맞서기

압바스와 아부-라흐메는 "팔레스타인의 견딜 수 없는 삶의 조건은 언제나 전 세계의 불안정한 삶의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주류 언론, 정치에서 팔레스타인은 마치 극단적 예외 사례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 행해지는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의 폭력을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예외화에 반대하여, 팔레스타인을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의 최전선으로 탈예외화하려는 논의들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3] 화석 자본주의라는 관점에서 정착민 식민주의를 중동에서의 서구 제국주의와 미국의 헤게모니, 석유를 중심으로 형성된 걸프 아랍 군주국들의 자본주의적 이해관계 등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 팔레스타인은 결코 일탈로 여겨질 수 없다. 오히려 "팔레스타인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정상

1) 바셀 압바스·루안 아부-라흐메 지음, 박기형 옮김, 「아카이브 다중」, 웹진 인-무브.

2) 길 Z. 호흐베르크 지음, 박기형 옮김, 『팔레스타인-되기: 미래의 아카이브적 상상을 향하여』 서문, 웹진 인-무브.

3) 안드레아스 말름 지음, 추선영 옮김,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두번째테제, 2025); Adam Hanieh, Robert Knox, Rafeef Ziadah, Resisting Erasure: Capital, Imperialism and Race in Palestine (London: Verso, 2025).



▲ 바셀 압바스 & 루안 아부-라흐메, <우리가 불이 되고 불이 우리가 되려면> 전시 포스터. 출처: 누화컨템포러리

일 수 없다."[4]

또한,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살아있는 주체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삭제와 부정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해나가고 있는지, 극한의 폭력 속에서도 어떻게 서로를 돌보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통 사회에서 행했던 삶의 방식을 변용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난민 캠프에서도 나름대로 사회를 건설하고 삶을 영위한다.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진 팔레스타인인들 중 누군가는 귀환을 염원하면서 미래에 건설할 팔레스타인 마을을 디자인한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걸프 군주들이 꿈꾸는 휘황찬란한 빌딩과 리조트들(가자 GREAT 계획이나 아브라함 회랑) 대신, 그 디자인들은 회복과 돌봄을 위한 장소들을 그린다. 광장, 놀이터, 도서관, 공공 교통, 공원, 주거시설 그리고 방문하지만 정주하지는 않을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재회호텔 등.[5] 이렇듯 팔레스타인은 분명 미래를 상상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매일 짓고 있다.

압바스와 아부-라흐메는 단언한다. "노래하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끝 모를 파괴로 깊이 파묻힌 과거의 메아리. 그러나 미래를 향해 울리고 있는 메아리. 그 메아리는 여전히 지금 여기 우리를 부르고 있다. 압바스와 아부-라흐메와 함께, 그 메아리를 듣고 함께 응답할 수 있기를. 알터

4) 샤리 플론스키(Sharri Plonski) 지음, 박기형 옮김, 「팔레스타인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정상일 수 없다」, 웹진 인-무브.

5) 누라 에라카트(Noura Erakat) 지음, 박기형 옮김, 「팔레스타인에서 미래를 디자인하기」, 웹진 인-무브.

의약품이 탄소배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차희원 회원, 약사

기후 위기와 보건 의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니, 물건에 대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일회용품. 알코올 솜, 주사기, 바늘, 약 봉투, 나이트릴 장갑. 사람들은 진료실에서, 병동에서, 처치실, 검사실, 약국에서 막대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경험한다. 그리고 결론짓는다. 어쩔 수 없다고. 모두의 안전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물론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바늘을 재사용한다면 혈액 감염이 일어나고, 유해 물질이 묻은 장갑은 바로 폐기하는 게 맞다. 우려하는 점은, 여기서 생각이 멈추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건 의료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문제를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다소 쉽게 덮어두곤 한다.

보건 의료 분야 탄소 배출에 대해 이야기하자

보건의료 분야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건 어마어마한 배출량 때문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지구 전체 탄소 배출량의 4.4%를 배출한다. 전체 탄소 배출량 중 교통, 운송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량을 15~20%로 잡는다고 하니, 그의 1/3에 해당하는 실로 엄청난 양이다. 보건의료에서 탄소 배출과 기후 위기에 관한 논의는 핵심 시설인 병원뿐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환자·직원의 교통수단, 의료폐기물 처리 등의 전 과정에서 이뤄진다.

대형병원은 24시간 가동되며, 무균 시설 등을 갖춘, 공조설비의 중요성이 큰 에너지 의존적 시설이다. 한국에서 매해 병원이 내는 전기료는 상급 종합병원 기준 수십억을 호가한다. 서울 상급 종합병원 중 탄소 배출 상위 3곳의 탄소 배출 총량을 합산하였을 때 모 자동차회사의 탄소 배출량의 무려 2.3배에 달한다.

또, 천식 환자를 위한 약물이나, 수술에서 사용하는 마취 가스에 온실가스가 사용되는데, 이들은 전체 의약품 탄소 배출량의 1%를 차지한다. 천식 환자를 위한 약물이 충진된 흡입기는 여러 가지 제형을 가진다. 그 중 '엘립타'와 '에보할러' 두 종류의 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보자. 두 흡입기는 추진가스 유무로 구분되는데, '에보할러' 제형의 경우 HFA 추진 가스를 이용하여 약품을 직접 분사한다. 이는 환자가 직접 들이마시는 '엘립타'에 비해 최대 약 60배까지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 '에보할러' 흡입기 한 개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휘발유 자동차로 약 150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양이다. 이는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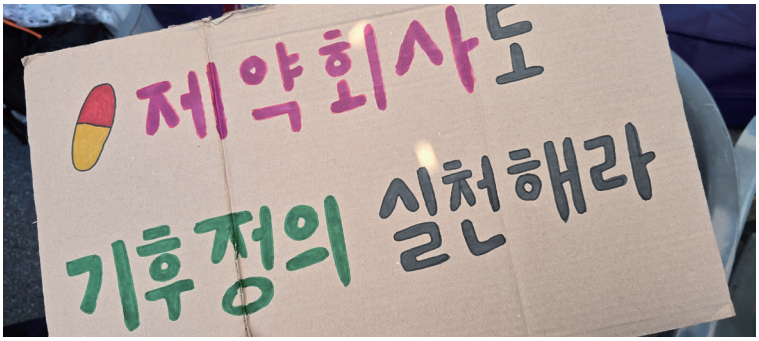
이산화탄소의 지구온난화 지수를 1이라고 했을 때, 병원에서 수술 시 사용하는 마취 가스인 '데스플루란 가스'의 지구온난화 지수는 2540에 달한다. 이 의약품은 지구온난화 지수 130의 '세보플루란 가스'로 대체가 가능하다. '데스플루란 가스'는 현재,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병원 내 구매 전면 금지, 잉글랜드에서 예외적 임상 상황을 제외하고 사용 중지되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의약품의 환경 영향

의약품은 태생적으로 탄소 집약적 성격을 띠는데, 제조, 유통 단계부터 그러하다. 의약품의 원료 물질은 대부분 중국과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원료 의약품이 국내로 수입된 후 완제품이 만들어진다. 원료 의약품의 운송 수단인 항공기나 선박의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약품 또한 냉장 보관 조건을 유지하며 운송하기에 필연적으로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

의약품의 폐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환경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약은 소량으로 효과를 내는 강력한 화학물질이다. 의약품을 함부로 폐기하면, 땅에 묻히거나 상하수도로 흘러들어간다. 하수처리장에 도착한 의약품은 일반적인 오염물질이 아니기에 정수 과정 중 거의 걸러지지 않고 하천으로 배출된다. 여러 의약품이 생태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중 항생제는 미생물의 변이를 유도할 수 있어, 특히 위험하다.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다양한 항생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다제내성균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이 다제내성균에 감염될 경우, 일반적인 항생제가 듣지 않아 쉽게 낫지 않고,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의약품은 예측 불가능한 생태학적 독성을 보이기도 한다. 1990년대 인도에서는 가축의 관절염 치료를 위해 다이클로페낙(Diclofenac)을 사용했다. 이 약물은 소에서는 정상적으



▲ 2026년 919 기후정의행진 때 만들었던 피켓. 사진 : 차희원

로 대사되었으나, 야생 독수리에게는 아니었다. 약물을 사용한 소의 사체를 뜯어먹은 야생 독수리는 급성신부전 증상으로 인해 97%가 사망하였고, 그 지역에서 멸종되었다.

이렇듯 여러 위험을 내포한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 방법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통일된 폐기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2026년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며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에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을 통해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전수 조사했다. 총 231개 지역 중 138개 지역에 전용 조례가 있었고, 41개 조례는 폐기물로 규정했으며, 5개 조례는 제한적 규정을 두는 상태였다. 47개 지역에는 아예 조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경기도 수원, 용인 같은 대도시에도 조례가 없었다. 똑같은 폐기물 조례라도 수거하는 장소가 다르고, 약국 수거에도 수거하는 약국이 불분명한 등,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관된 행정 시스템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나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간접 공급망은 전체 보건의료 분야의 탄소 배출량 중 70%를 차지한다. 영국 NHS는 보건의료분야 탄소 배출량 감소에 공급망을 통한 감소를 주요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다. NHS는 병원 등 직접 통제 영역의 탄소 배출량 넷제로(Net Zero)를 2040년까지, 공급망 등 간접 배출량 넷제로를 2050년까지 하겠다고 선언했다. 8만 개 공급업체들이 이를 공동 목표로 삼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원에 오고, 약을 먹는 이유는 아프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지표를 추적하는 란셋 카운트다운 보고서의 2025~2026년도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와 비교했을 때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49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 급증했다. 이외에도 정신 건강 지표, 감염병 지표 또한 전년 대비 악화했다. 기후 위기는 아픈 사람들을 늘리고 있다. 아프지 않다면, 병원에 올 일도, 약을 쓸 일도 없다. 지구의 건강을 위한 실천은 나의 건강을 위한 실천이기도 하다. 일터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기후정의를 말하다

기선옥 회원, 기후정의팀

10월 12일 월요일 저녁, 한노보연 <기후정의와 노동자건강권 현장회원 간담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심각한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는 지금,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변화는 무엇인지 살피고 산별 노동 현장 실태, 실천 등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발제는 조건희 활동가가, 지정토론은 서비스, 통신, 공공교통 노동운동 현장에서 활동해 온 세 회원이 진행했다.

현장에서 기후정의 고민하기

토론회 시작을 연 발제 주제는 '노동자가 주체가 된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였다. 다소 거칠게 풀이하자면 기후위기 적응은 현재의 기후재난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기후위기 완화란 기후위기의 속도 자체를 늦추는 것을 말한다. 조건희 활동가는 두 과제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살폈다. 기후재난으로 인해 우리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 권리', 기후재난 발생·산업전환 시 그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리', 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법, 부당한 생산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이 만든 열 스트레스 위험성 체크리스트, 한노보연이 2026년 여름 실행한 골프장 온도 현장조사 등을 사례로 들어 이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알렸다.

지정토론에서 정하나 회원은 택배, 가전통신과 배달 등 노동시간 내내 이동해야 하는 서비스산업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현장 실태를 전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는 2023년 이상기후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기반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요구

하도록 가맹노조에 권고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일한 건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 지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비스연맹이 2024년 서비스직 이동노동자 1,1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재난 시 노동자 96%가 '위험하다'고 느꼈고, 몸의 이상을 느낀 사람도 85%에 달했지만 대부분 제때 작업을 중단하지 못했다. 이에 노조에서는 기후재난 시 이동노동-특수고용 노동자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고온의 주차장에서 일하던 마트 노동자가 급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에도 대응하며 기후위기 관련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정지승 회원은 통신서비스 노동자들의 기후위기 대응 실태를 알렸다. 희망연대본부가 진행한 기후재난 질환예방 대책 수립, 작업중지 보장 등 기후위기 적응 실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수립 노사 논의 등을 단체협약으로 요구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각 활동에 대한 평가와 고민도 전달했다. 노동자 고령화를 고려해 옥외 작업 할당을 조정하는 등 기후재난 대응이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으나, 개개 작업장의 조건을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도 모르면서 알 권리가 훼손되는 문제, 'ESG' 경영을 표방하는 사측이 기후재난 대응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사측의 경영 방침을 따르라고 응답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나위 회원은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처한 기후위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기후위기 대응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노동조합 기후정의운동에서의 고민을 전했다. 최근 철도노조는 <한겨레>와의 공동기획에서 폭염으로 인해 선로가 구부러지는 일, 집중호우 산사태로 인한 선로가 끊어지는 일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부산지하철 역시 안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나위 회원은 여전히 기후정의운동이 노동운동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같은 업종에서도 정규직은 작업중지 권한이 있지만, 비정규직과 일용직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등을 들며 기후재난의 불평등 문제도 짚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과제들

세 토론에서 언급된 산업들이 모두 내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곳들이기에 토론회 내내 집중할 수 있었다. 택배, 마트, 핸드폰과 인터넷, 지하철 모두 내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내게도 친숙한 산업 현장 곳곳에 노동자들이 있고, 한노보연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 2026 919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석탄화력발전소비정규직노동자들. 사진 : 백승호

그런 한편, 익히 알고 있거나 언론보도로 접한 문제임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힘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 걱정스러운 마음도 일었다. 나만 하더라도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함을 잘 알면서도 택배 물품이나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일개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곤 한다. 새벽배송을 시키지 않거나 배달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만이 전부일까? 그래서 기후정의운동의 결과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협약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정지승 회원의 말에 무척 공감했다. 개인의 실천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 정부가 이 구조를 바꿔야 하고, 기업이 확실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금의 산업전환이 자본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는 문제, '3대 메가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계획에 주도적으로 나서면서도 그린워싱을 일삼는 문제,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등의 문제를 들으며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정부와 자본이 말 그대로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위가 이 정도여도 과연 괜찮을까? 기후위기 '적응', '완화'라는 표현은 너무 현실과 타협하는 게 아닐까?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노동자가 중심이 된 산업전환을 해낼 수 있을까? 기후위기시대에 노동운동은 대중과 정부를 설득하고 자본을 압박할 산업전환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등등….

기후재난의 속도는 빠르지만, 아직도 신자유주의 체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무척 걱정스럽다. 하지만 걱정되는 만큼 이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시금 느끼게 된다. 기후정의운동을 매개로 노동과 시민 대중이 긴밀히 연결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며, 노동자가 앞장서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싶다. 알터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환대받고 안전한 하루가 되기를

마이 회원,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모름지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퀴어라면 정신병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

사랑하는 퀴어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 혹은 유튜브에서 보았나? 어디에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말이었다. 내 주변의 표본으로만 보면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과거에 먹었거나, 현재 먹고 있거나, 먹어야 하는데 병원 가는 날짜를 미루고 있거나 셋 중 하나였다.[1] 이 미친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다면 단단하고 안전한 특권 안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바깥의 모든 존재가 부디 자신들의 명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트랜스젠더의 안전+권리+연대를 다짐하며

이 이야기는 11월 20일의 TDoR(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끄적이는 글이다. TDoR은 1998년 11월 28일 미국에서 발생한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로 흑인 트랜스 여성이었던 리타 헤스터가 살해당했던 사건을 계기로, 1999년 11월 20일부터 트랜스 혐오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알리고, 함께하는 국제 기념일이다. 한국 역시 이 시기에 맞춰, 소규모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의 추모에서 시작해 광장에서의 규모 있는 행동과 집회로 이어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2026 트랜스마치(Trans March)"라는 이름으로, 11월 21일 토요일 15시 보신각에서 집회가 준비, 조직되고 있다.

1) 2020년의 국내 역학 연구에서 트랜스젠더 인구 집단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6~10배, 자살 사고는 6~19배 높았다. Lee H, Operario D, van den Berg JJ, Yi H, Choo S, Kim SS. Health Disparities Among Transgender Adults in South Korea. Asia Pac J Public Health. 2020 Mar-Apr;32(2-3):103-110.

나는 시스젠더이고, 운 좋게도 밥 굶을 일 없는 직업을 갖게 됐다. 나는 충분히 앨라이(소수자 집단의 당사자는 아니면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일까? 시스젠더로서 갖는 특권은 공기와도 같아 내가 제대로 알아채기 어렵다. 그래도 "나는 앨라이야!" 라고 용기내어 말하고 싶다. 어쩌다 이 주제가 화제에 오를라치면 "나는 성소수자를 본 적이 없어서…"라고 시작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그 말에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담백하게 건네 본다. "저는 친구들 중에 성소수자가 있는데요, 아마 선생님 주변에도 있는데 모르셨던 걸 거예요."

앨라이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 '완벽한 앨라이가 되는 법이 아니라 꽤 그럴듯한 앨라이가 되는 법'을 적었다는, 『성소수자 지지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지니 게인스버그 지음, 허원 옮김, 2022, 현암사)라는 멋진 책이 있다. 앨라이로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록만 마주하면 주눅들기 쉽다. 그보다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덜 완벽하더라도 '앨라이 되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니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일독을 권한다.

"성소수자의 동료가 된다는 것은 곧 성소수자 동료를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상 속 시스젠더로서의 특권을 온전히 깨닫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트랜스였다면?' 하고 가정해 본다. 나는 여성인데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다면 부모님은 나를 과연 받아들였을까.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 학업과 안전한 삶을 지원했을까. 밖에서 남자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도 마음 편히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모든 삶에서 완벽하게 남장을 하고 생활할 수 있었을까(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혐오 폭력의 대상이 될 텐데). 취직하기 전에 몇천만 원을 벌어서 수술까지 하고 성별 정정을 마칠 수 있을까. 의료적 트랜지션을 하더라도 하루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로 패싱될지도 사람마다 다른데,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상상할수록 하드코어하다. 그런 난이도 높은 세상을 혼자서는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 같으니 가까이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길 바라본다. 다시 시스젠더인 나로 돌아가서, 나는 성소수자 친구들이 평온한 하루를 이어가는 데 무엇을 보탤 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우리를 위한 친절한 안내서가 있다. 앞서 언급한 지니 게인스버그의 책 외에도 <성소수자의 동료가 될 당신에게-성소수자의 직장 동료를 위한 일터 가이드북>(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라는 훨씬 짧은 가이드북이 있는데, pdf가 공개되어 있고 무료다. QR을 동봉하니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성소수자에 대한 흔한 오해에 대한 해설과 동료가 나에게 커밍아웃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연습해 볼 수 있는 적당한 멘트



▲ <성소수자 지지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왼쪽)와 <성소수자의 동료가 될 당신에게>(오른쪽) 책표지 이미지.

도 소개되어 있다. 맨 뒤에는 내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다. "성소수자의 동료가 된다는 것은 곧 성소수자 동료를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앨라이는 더 늘어나야 하고,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성소수자 주제를 다루는 책과 미디어를 어릴 때부터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일터에서 성소수자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언어와 제도를 마주하지 않으면 좋겠고, 서류에 정확한 젠더를 표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성소수자 동료에게, 고객에게, 환자에게, 민원인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이 너무 큰 이야기 같다면 내 주변, 나보다 상사인 사람 딱 한 명만 앨라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보면 어떨까. 코로나보다 독감보다 더 큰 전파력으로 앨라이가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본다. 성소수자인 사랑하는 내 친구들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환대받고 안전한 하루가 되기를.

▲ 성소수자의 동료가 될 당신에게 - 성소수자의 직장 동료를 위한 일터 가이드북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2023)

심리부검으로 자살의 구조적 원인 찾아보기

-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25)

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성과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노동자 상담을 종종 하게 된다. 얘기를 듣다 보면 직장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연애 관계 문제나 가족과의 갈등이 심한 경우도 많다. 이런 사례가 오히려 보편적이다. 삶을 스스로 끝내는 일인데 한 가지 이유로 모두 설명되는 사례가 얼마나 되겠는가. 참고 견뎌내야 할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거나, 하나의 문제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 다른 짐이 얹어지고, 몇 번의 고비를 버텨냈는데 막상 마지막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 발부리가 걸리기도 할 것이다.

자살의 이유를 다시 묻다

그런데 지금 한국 자살통계는 자살을 한 가지 동기로만 설명한다. 매년 자살통계연보가 나온다.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직업별, 수단별, 장소별 자살 현황, 자해 시도 현황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자살의 동기별 통계도 있다. 가장 최근의 자살통계인 2024년 연보를 보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35.4%로 가장 많고, 경제 생활 문제 29.6%, 육체적 질병 문제 15.2% 순이다.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는 3.3%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통계만으로는 아쉽다.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래된 만성질환이었는지 비교적 최근에 발병한 경우였는지, 망상이나 환각 등 현실지남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였는지, 최근에 질병을 악화시킬 스트레스 경험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자살의 원인이나 동기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해결책이나 과제도 불분명해진다. 자살자의 1/3이 정신과적 문제 때문이라면 정신질환 치료를 잘 받게 하자는 게 해결책으로 제시될 뿐이다. 이것만으로는 30년째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던져주는 게 심리부검이다. 심리부검이란 현장 조사, 자료 분석, 유가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사망자의 삶과 사망 직전 행적을 다양한 각도로 조망하여, 사망자의 삶, 생활 형태와 환경,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과 행동을 재구성하기 위한 사후 조사 과정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2015년 이후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별 기간이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살사망자의 가족, 동료, 친구, 지인 등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단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사망자의 사망 직전 6개월간 근황을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직업적 원인이 크다지만, 해결책은?

2025년 12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경기도자살예방센터는 2015년 이후 심리부검 면담 사례 중 19~65세, 경기도 자살사망자 289명의 자료를 분석해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분석에 따르면, 자살자들의 64.7%가 사망 전 4개 이상의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했다. 정신건강 관련 사건이 84.8%로 가장 많지만, 가족 관련, 경제 관련 스트레스 사건도 60%가 넘는다. 개별 자살 동기로는 5% 미만에 불과했던 직업 관련 스트레스 사건도 58.1%나 된다. 특히 이 중, 35~49세 사이의 장년기에는 경제 관련 스트레스 사건이 71%, 직업 관련 스트레스 사건이 70%를 차지했다. 30~40대 자살을 줄이기 위해 경제나 직업 관련 스트레스 사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이런 분석 후에도 중장년 자살 예방책은 '직무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만성질환 등 복합적 위험요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강화' 정도로 제시되는 것은 아쉽다. '지원'과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년기 경제적·직업적 어려움의 구조적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경제·산업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이 전 세계적 망신이라고 했다. 그런데 '초광역특구법'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기간제나 파견이라는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는 법을 밀어붙이고, '국민들이 주식으로 생활비 벌 수 있게' 하겠다며 투기적 증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직업적 스트레스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자살에 이르는 중장년 노동자들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좋은 삶,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상상하고, 요구하는 것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지름길일 것 같다.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브라질에서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일터

이숙견 상임활동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안)」을 박상혁 의원 안(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과 최기상 의원 안(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으로 나누어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재벌 특혜를 통하여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고, 기후 위기를 심화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구소는 긴급하게 '노동건강권·기후환경 파괴하는 초광역특구법안 폐기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배포하였습니다. 특별법의 이름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은 물론, 기후 생태의 복원력까지 심각하게 파괴하는 정부·여당의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일부 재벌과 대기업을, 이윤을 위하여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힘을 쏟는 것입니다. 연구소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성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부산에서는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부산 지역 산재사망 노동자와 사회적 재난 참사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도 10월 26일 저녁 6시부터 추모제가 진행되었는데요. 연구소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가톨릭노동상담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이번 추모제는 위험의 이주화와 사회적 차별로 희생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사망재해를 다루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51건의 사망재해로, 59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오마이뉴스> '이달의 살인기업' 참조).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가 사망한 고 뚜안 님의 1주기를 맞아 제작된 다큐멘터리 <뚜안에게 가는 길> 공동체 상영, 이후 영상을 제작한 <뉴스민> 박중엽 기자와 지역 활동가가 함께하는 GV 행사도 가졌습니다.



발행인
손진우

발행기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
가영, 기형, 명환, 민, 숙견, 영우,
용현, 윤박, 정열, 혜인

편집·표지
프롭스비309

인쇄
동광문화사

발송
서울디엠

발행일
2026.11.4

전화
서울 02-324-8633, 수원 031-247-8633,
부산 051-816-8633

팩스
서울 02-324-8632, 수원 031-247-8632

이메일
kilshlabor@gmail.com

홈페이지
www.kilsh.or.kr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정기구독 회원을 모집합니다

6개월 구독료 25,000원 / 1년 구독료 50,000원 / 권당가격 5,000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660401-01-702487 예금주 : 한노보연
구독신청 QR코드 접속 또는 링크 접속 (bit.ly/일터구독신청)

한노보연 회원 가입신청

회원 가입 ➡ 우측 **QR코드** 인식 후 가입
기부 방법은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기부금
②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기부금
③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조성된 기부금
④ 기부자가 본인 혹은 지인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후원하는 경우
⑤ 기부하고자 하는 상품, 서비스, 현물 등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⑥ 기부금의 액수가 과도하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⑦ 기부금 거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문의 | 02-324-8633, kilshlabor@gmail.com

우리는 특별대우가 아니라 그저 안전하게 일하고 싶을 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 평범한 말이, 여전히 납 섞인 흙이 퍼지는 현장과 사람들을 더는 방치하지 않는 일이 그렇게나 특별한 요구였는지 묻는 얼굴로.
2026. 서울. 납 노출 규명 및 작업환경 개선위원회 좌초 위기를 규탄하고자 상경한 금속노조 DN오토모티브지회의 기자회견 자리.

이 사진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노동 현장을 담아내는 사진작가 윤성희 회원의 작품입니다.

